

#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1012
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7일  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회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대상 중 일부 오기되거나 누락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고, 조례안 발의 후 제정된 4건의 조례를 추가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누락된 조문을 추가함(안 제11조).
- 나. 오타를 수정하고 개정대상을 명확히 함(안 제58조)
- 다. 조례에 없는 조문을 삭제하고, 누락된 조문을 추가함(안 제126조)
- 라. 새로 제정된 조례를 추가함(안 제203조부터 안 제206조까지)

# **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 중 “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”를 “제18조제1항  
제1호부터 제5호까지”로 한다.

안 제58조 중 ““기타 이용율”을 “그 밖의 이용율””을 ““기타 이용률”을  
“그 밖의 이용률””로 하고, “별표 5의 기호(○)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 
하고, 같은 표 (4)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 것”으로 하며, 같은 표 (3) 중  
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 것”으로 한다”를 “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“기타 이와  
유사한 건물”을 각각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”로, “벽이 기타인 것”을  
각각 “벽이 그 밖의 것인 것”으로 하며, “지붕이 기타인 것”을 “지붕이 그 밖의  
것인 것”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26조 중 “제11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”를 삭제하고,  
“제12조제3항 중 “그 밖에 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”를 신설한다.

제203조부터 제2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3조(「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

제204조(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5조(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5조(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례안	수정안
<p>제11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 <p><u>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</u>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 <p>제5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2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등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p> <p>제5조제3호 중 “당해지역”을 “해당 지역”으로 한다.</p> <p>제7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p> <p>제9조제3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<u>“기타 이용률”을 “그 밖의 이용률”</u>로 한다.</p> <p><u>별표 5의 기호(O)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표 (4)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 것”으로 하며, 같은 표 (3)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 것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26조(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7조제7호 중 “부의한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</p> <p><u>제11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1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제2항제1호리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 <p><u>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</u>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 <p>제37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 <p>제5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원안과 같음)</p> <p>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<u>“기타 이용률”을 “그 밖의 이용률”</u>로 한다.</p> <p><u>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“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”을 각각 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”로, “벽이 기타인 것”을 각각 “벽이 그 밖의 것인 것”으로 하며, “지붕이 기타인 것”을 “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”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26조(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삭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제12조제3항 중 “그 밖에 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03조(「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7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u></p> <p><u>제11조제2항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</u></p>
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04조(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05조(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06조(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 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 제14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 정비를 통하여 시민 중심 언어의 자치법규 반영과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「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**제3조(「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**제4조(「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

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 및 그 밖에 이와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다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· 지원 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 ·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9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라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

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·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별지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2호 각 표 외의 부분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호 분류란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시설물”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및 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0조(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별지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1조(「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시설비”를 “그 밖의 시설비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2조(「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

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3조(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1조 중 “그 내용 기타”를 “그 내용,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4조(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별표2 중 “공작물 기타의”를 “공작물, 그 밖에 물품이나 공작물의”로 하고, “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”를 “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”로 한다.

제25조(「서울특별시 공유(共有)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유(共  
有)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6조(「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  
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0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7조(「서울특별시 공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일부를
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조의2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및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중 폐기방법 란의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방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중 폐기사유 란의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사유”로 하고, 폐기 방법 란의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방법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 서식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사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(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2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9조(「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0조(「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전단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1조(「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장의 제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2조(「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부의사항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사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(「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4조(「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

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5조(「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기

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6조(「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

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7조(「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

정)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8조(「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남

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타수입금”을 “그 밖의 수입금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9조(「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0조(「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호카목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1조(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2조(「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3조(「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4조(「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5조(「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

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6조(「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

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
다.

제1조 중 “기타장비”를 “그 밖의 장비”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장 제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사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 서식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비용”으로 한다.

제47조(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 
정한다.

제11조제3항 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제1호다목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9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3제2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5조 각 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 각 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2호가목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4조의3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표 1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사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(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1조(「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

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2조(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2조제3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3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4항제3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4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6조의4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5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6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7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공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8조(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등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당해지역”을 “해당 지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이용률 구분란의 “기타 이용률”을 “그 밖의 이용률”로 한다.

별표 5의 표 용도란 중 “기타 이와 유사한 건물”을 각각 “그 밖에 이와 유사

한 건물”로, “벽이 기타인 것”을 각각 “벽이 그 밖의 것인 것”으로 하며, “지붕이 기타인 것”을 “지붕이 그 밖의 것인 것”으로 한다.

제59조(「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0조(「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호 중 “옥내·외 기타공간”을 “그 밖에 옥내·외의 공간”으로 한다.

제61조(「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2조(「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3조(「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6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2조제4항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4조(「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중 “(기타)”를 “(그 밖의 사항)”으로 한다.

제65조(「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6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 중 “당해지구”를 “해당 지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7조(「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

로 한다.

제68조(「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기타”를 “등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9조(「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0조(「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5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7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1조(「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 ·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설치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72조(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.

제14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3조(「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조례 제7220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4조(「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·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·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75조(「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6조(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전단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7조(「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위원회에 부의할”을 “위원회 회의에 부칠”로 한다.

제78조(「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79조(「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80조(「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1조(「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82조(「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1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3조(「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4조(「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5조(「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빙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2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6조제3항제4호 및 제5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6조(「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7조(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8조(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9조(「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0조(「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1조(「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2조(「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93조(「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관 설치 ·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4조(「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5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6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수입”을 “그 밖의 수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7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8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

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9조(「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0조(「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1조(「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2조(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7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3조(「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4조(「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3항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5조(「서울특별시 수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6조(「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07조(「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8조(「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7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09조(「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장의 제목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 사항”으로 한다.

제110조(「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1조(「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2조(「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의2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제4호 중 “부의”를 “의뢰”로 하고,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**제113조(「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**

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**제114조(「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9조제6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**제115조(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4조의2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**제116조(「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**

제2조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7조(「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8조(「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9조(「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0조(「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1조(「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2조(「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어린이·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9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23조(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5조제6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4조(「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3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5조(「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6조(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7호 중 “부의한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그 밖에 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7조(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5항 중 “여비 기타”를 “여비,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8조(「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9조(「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0조(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“당해 건물명이나 당해”를 “해당 건물명이나 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, 같은 항 제5호, 제8호 단서, 같은 항 제9호가목, 나목 및 마목 후단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단서, 제2호 본문 및 제3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2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 공공·공용 분야의 시설의 종류란 중 “당해시설물”을 “해당시설물”로 한다.

제131조(「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7조 중 “해당”을 “당해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해당”을 “당해”로 한다.

제132조(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8호 중 “위원회에 부의하는”을 “위원회 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4조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3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4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5조(「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사목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4항 본문 중 “당해직”을 “해당 직위”로 한다.

제136조(「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7조(「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8조(「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9조(「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0조(「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

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1조(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42조(「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143조(「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의2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4조(「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

밖의”로 한다.

제145조(「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회복 기타”를 “회복,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6조(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4항 후단 중 “부의 할”을 “제출할”로 한다.

제147조(「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48조(「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계약투명성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49조(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그 밖의 부의안건”을 각각 “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2항 후단 중 “부의하여야”를 “부쳐야”로 한다.

제37조제9항 후단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7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각각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8조제1항제9호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쳐진 안건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1조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로 한다.

제150조(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본문 중 “부의사항”을 “심의안건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1조(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항 단서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4항 중 “부의 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쳐진 안건”으로 한다.

제152조(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4항제3호 중 “조사 기타”를 “조사,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3조(「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4조(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의2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55조(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6조(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5제2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의2제1항 전단, 제2항 및 제3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57조(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58조(「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59조(「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0조(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1조(「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62조(「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3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4조의 제목 “(기타)”를 “(그 밖의 사항)”으로 한다.

제163조(「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164조(「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5조(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6조(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67조(「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8조(「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

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69조(「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0조(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1조(「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2조(「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6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조의2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73조(「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74조(「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호라목 중 “밖에 기타”를 “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5조(「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76조(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77조(「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8조(「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지하

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6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79조(「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의 개정)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 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0조(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

정)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1조(「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

시 차량정비센터 정비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5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2조(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제8호 중 “기타 그 밖에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3조(「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허위 기타”를 “허위, 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84조(「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5조(「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기타공사”를 “그 밖의 공사”로 한다.

제186조(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개

정)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수입금”을 “그 밖의 수입금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87조(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88조(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89조(「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0조(「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1조(「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
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2조(「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 중 “협의회에 부의할”을 “협의회 회의에 부칠”로 한다.

제193조(「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4조(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5조(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”으로 한다.

제22조제2항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중 “당해년도”를 각각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29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전단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6조(「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3호 중 “당해”를 각각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별표 1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9. 그 밖의 시설

별표 2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표 기준및이용료란 기호(·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· 그 밖의 대관

별표 2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표 제8호 입장권 발매 행사의 기준및이용료란 중 “기타공연”을 “그 밖의 공연”으로 한다.

제197조(「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8조(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1항 중 “오수 기타 하수”를 “오수, 그 밖의 하수”로 한다.

제199조(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4제1항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0조(「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홍보매체 시민개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201조(「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8조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2조(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

정)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203조(「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

제204조(「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5조(「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대안 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206조(「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본문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